

[서식 예] 채권가압류신청서(추심채권으로 대여금채권)

채권가압류신청

채 권 자 OOO (주민등록번호) OO시 OO구 OO길 OO

채 무 자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로 ○○

제3채무자 ◆◆◆ (주민등록번호) ○○시 ○○구 ▽▽▽▽

청구채권의 표시 및 피보전권리

금 1,000,000원(추심금 채권)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

신 청 취 지

-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의 채권을 가압류한다.
-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 1. 채권자는 ○○시 ○○구 ○○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외 ◎◎◎에게 고용되어 일했던 근로자로서, 20○○. ○. ○.부터 20○○. ○○. ○.까지 근로를 제공하다 퇴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외 ◎◎◎은 채권자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소외 ◎◎◎을 상대로 ▽▽지방법원 ◎◎지원 20□□가소 ○○○○호 임금 소송을 제기해 20○○. ○. ○.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 2. 한편 위 소외 ◎◎◎은 채무자에게 1,000,000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소외 ◎◎◎의 채무자에 대한 위 채권에 관하여 ▽▽ 지방법원 ◎◎지원 20◇◇타채◆◆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채 권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은 20○○. ○. ○. 채무자에게 송달되었습니다.
- 3.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 소송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유일한 채무자의 재산으로 파악되고 있고, 채무자가 위 채권을 처분할 경우 집행할 재산이 없게 될 우려가 있어 집행보전을 위해 이 사건 가압류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 4. 채권자는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으므로 담보제공은 공탁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1. 소갑 제2호증

송달 • 확정증명원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각 1통

1.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채무자 주소지, 토지 및 건물)

각1통

1. 가압류신청 진술서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채권자 ○○○ (서명 또는 날인)



[별 지]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금 1,000,000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 채권 가운데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끝.



[별 지 2]

가압류신청 진술서

채권자는 가압류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 사실을 진술합니다. 다음의 진술과 관련하여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내용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보정명령 없이 신청이 기각 되거나 가압류이의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 다음 ◇

1. 피보전권리(청구채권)와 관련하여

가.	채무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채무자 주장의 요지 :
	□ 기타 :
, 1	레마카이 이미크 이런 이번의 비비스크 원이되어사이템이 (기대

- 나. 채무자의 의사를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확인하였습니까? (소명자료 첨부)
- 다. 채권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금액은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금액으로 적정하게 산출된 것입니까? (과도한 가압류로 인해 채무자가 손해를 입으면 배상하여야 함)

□ 예 □ 아니오

2. 보전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 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하지 않으면 향후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해질 사유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 나.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과 관련하여 공정증서 또는 제소전화해조서가 있습니까?



다.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과 관련하여 취득한 담보가 있습니까? 있다면 이 사건 가압류를 신청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	[채무자가 (연대)보증인인 경우] 채권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어떠한 보전조치를 취하였습니까?
마.	[다수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인 경우] 각 부동산의 가액은 얼마입니까? (소명자료 첨부)
	[유체동산 또는 채권 가압류신청인 경우] 채무자에게는 가압류할 부동산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채무자의 주소지 소재 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 ["예"로 대답한 경우] 가압류할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이 아닌 유체동산 또는 채권 가압 류신청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이미 부동산상의 선순위 담보 등이 부동산가액을 초과함 →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가 액소명자료 첨부 □ 기타 사유 → 내용:
	[유체동산가압류 신청인 경우] ① 가압류할 유체동산의 품목, 가액은?
	②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어떠한 보전조치를 취하였습니까? 그 결과는?
-	본안소송과 관련하여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나. ["예"로 대답한 경우]
① 본안소송을 제기한 법원.사건번호.사건명은?
② 현재 진행상황 또는 소송결과는?
다. ["아니오"로 대답한 경우] 채권자는 본안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까? □ 예 → 본안소송 제기 예정일 : □ 아니오 → 사유 :
4. 중복가압류와 관련하여
가.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금액 불문)을 원인으로, 이 신청 외에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가압류를 신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과거 및 현재 포함) □ 예 □ 아니오
나. ["예"로 대답한 경우]
① 가압류를 신청한 법원.사건번호.사건명은?
② 현재 진행상황 또는 결과(취하/각하/인용/기각 등)는? (소명자료 첨부)

다. [다른 가압류가 인용된 경우] 추가로 이 사건 가압류를 신청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명 자료 첨부)



제출법원 기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						
제출부수	신청서 1부(당사자목록, 청구채권목록, 가압류채권목록 각 5부정도 첨부) 만사집행법 제276조, 제278조					
불복절차 및 기간	(채권자) .가압류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민사집행법 제281조 제2항)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의 불변기간(민사소송법 제444조) (채무자)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민사집행법 제283조), 본안의 제소명령(민사집행법 제287조) .이의신청의 시기에 관하여는 법률상 제한이 없으므로 가압류결정이유효하게 존재하고 취소.변경을 구할 실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할수 있음. 가압류명령이 발령되어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이상 채무자는 본안의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					
비 용	비 용 ・인지액:○○○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 ・송달료:○○○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					
* 가압류신청 진술서의 제출 새로 제정된 보전처분 신청사건의 사무처리요령(재민 2003-4) 7 6. 12. [재판예규 제1229호, 시행 2008. 7. 1.] 제3조의 규정에 미 11. 1.부터 가압류를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가압류신청 진술서를 기록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첨부하지 않거나, 고의로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내용이 발견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한 보정명령 없이 기각될 수 있음						



※ 집행절차

보험증권을 법원신청과에 제출 (보험증권앞면 사본 수통을 함께 제출)

* 가압류 사건에서 선담보제공 방식도입(부동산.자동차.채권에 한함)

- 1. 부동산, 자동차, 임금 또는 영업자 예금을 제외한 채권에 대한 가압류 사건은 채권자가 가압류신청시에 법원의 담보제공명령 없이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미리 공탁보증보험증권(보증서)을 발급받아 보증서 원본을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함
 - ★ 가처분 사건과 유체동산 가압류 사건은 제외
- 2. 보증금액
 - 아래의 가압류신청사건에 대한 담보기준 참고
- 3. 가압류신청서상에 담보제공은 증권제출 허가신청 의사표시를 기재하여야 함에) 담보제공은 공탁보증보험증권(○○보험증권회사 증권번호 제○○○ ○○○호)을 제출하는 방법에 의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압류신청사건에 대한 담보기준

구 분	부 동 산	채 권	유 체 동 산
담보제공액	청구금액의 1/10 ¹⁾	청구금액의 2/5 ²⁾	청구금액의 4/5 ³⁾
담보제공 방법	현금공탁 또는 보증보험증권 ⁴⁾	○현금공탁 또는 보증보험증권 ⁴⁾ ○다만, 임금, 영업자 예 금의 경우에는 반드시 담보제공액의 1/2 범위 내의 현금공탁 (즉, 청구 금액의 1/5 범위 내의 현금 공탁과 나머지 담보제공액에 관한 보증보험증권) ⁵⁾	구금액의 2/5) 범위 내의 현금공탁과 나머 지 담보제공액에 관한
채권자별 구분 ⁶⁾	없음	없음	없음
선담보 ⁷⁾	가능	가능 (임금, 영업자 예금 제외)	불가능
기타 ⁸⁾	소명 정도에 따라 담 보제공액 중 일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현 금공탁만을 허용	재권에 대하여노 소명 성	

- 1) 변동 없음
- 2) 담보제공액 100% 증액(1/5 → 2/5)
- 3) 담보제공액 140% 증액(1/3 → 4/5)
- 4) 원칙적으로 현금공탁을 할 것인지 보증보험증권으로 할 것인지의 선택을 채권자에게 맡김
- 5) 유체동산, 임금, 영업자 예금의 경우 담보제공액의 일정한 비율에 대하여는 현금공 탁만을 담보로 인정함
- 6) 공공기관, 금융기관, 개인 구분을 없앰.

 다만,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담보제공 방법을 찾을 때까지 현행과 같이 무공탁



- 7) 임금, 영업자 예금, 유체동산을 제외하고는 현행과 같이 선담보제공 허용
- 8) 부동산가압류, 임금 및 영업자 예금을 제외한 채권가압류에 대하여는 피보전권리 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 정도에 따라 담보제공액 중 일정한 부분에 대하여 는 담보로 현금공탁만을 허용

※ 가압류신청 진술서의 제출

새로 제정된 보전처분신청사건의사무처리요령(대법원재판예규 재민 2003-4) 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03. 11. 1.부터 가압류를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가압류신청 진술서를 신청사건 기록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첨부하지 않거나, 고의로 진술 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내용이 발견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정명령 없이 기각될 수 있음

●●●분류표시 : 민사집행 >> 가압류, 가처분